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346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정부안) ...	2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연장(정부안)	6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346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8. 30.
- (3) 회 부 일 : 2024. 9.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 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정부안)

현행	개정안
☐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제11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 이중과세 방지: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다른 당사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음 - 제조자등 - 판매자등	☐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대상자 확대 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 가짜석유제품, <u>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u>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 (현행과 같음) ○ 이중과세 방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수출 및 군납면세, 외교관면세, 조건부면세 등에 따른 면세유의 반입자·양수자</u>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465)

☐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거래자료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 및 군

납 등을 목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받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과세물품인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수입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함)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¹⁾.

그러나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경유 대신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판매한 자에게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자등에게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²⁾.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2.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다음 각 목의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또한, 수출용, 주한외국군대 납품용, 주한외교공관 및 주한외교관 등이 소유한 자동차용,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용 과세물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세되도록 하되, 해당 면세유를 목적 외로 사용한 사람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³⁾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의 면세유를 목적 외로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⁴⁾할 수 있음.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라.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 ②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수출 및 군납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의 반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다.

제14조(외교관면세)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자동차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한다.

②~③ (생략)

④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한다.

1.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2. 제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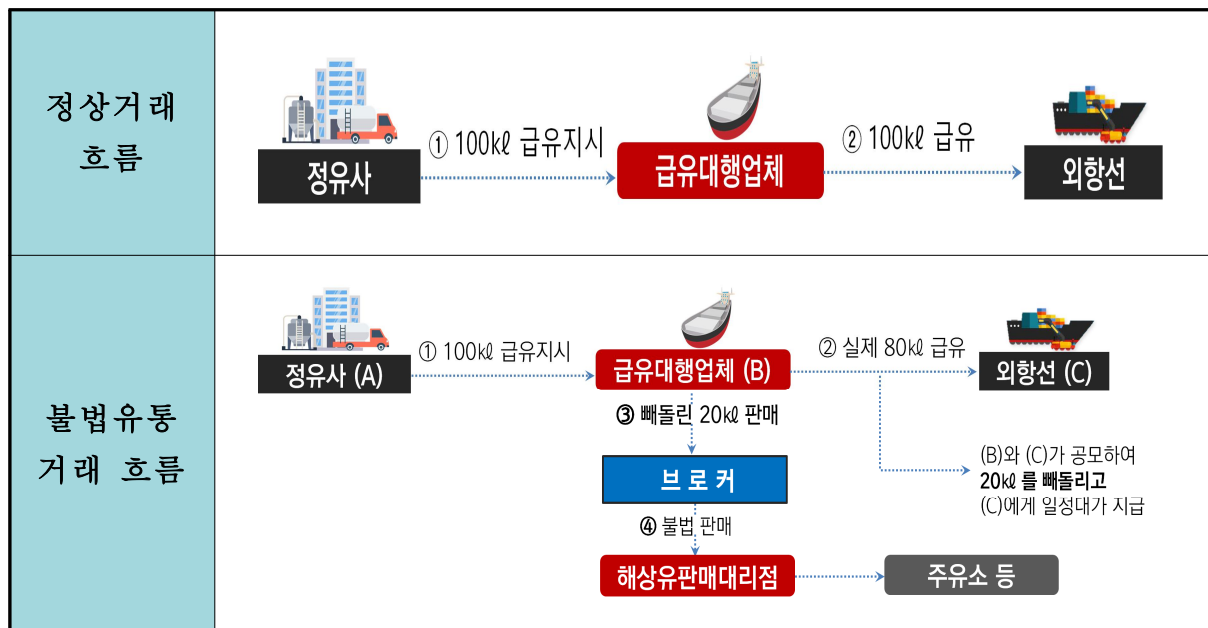
3.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반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3항·제5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이러한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유대행사가 외국항행선박에 소위 해상면세유라 불리우는 선박연료를 급유하면서 그 일부를 빼돌려 판매대리점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 해당 대리점은 명의를 위장하거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없이 해상면세유를 매입하여 조세탈루 단기영업 주유소(소위 ‘먹튀주유소’로서 단기간 영업한 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에 판매하는 등 면세유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면서 탈세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상면세유 정상거래 및 불법유통 거래 흐름]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탈세의 원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2024. 2.26)

□ 이처럼 불법유통되는 해상면세유는 이를 반출하는 자를 특정하기

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5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쉽지 않고, 관련 거래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조세탈루단기영업 주유소)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고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동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및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의 내용⁵⁾과 그 목적 및 취지가 유사함.

문 의 처

02)6788-5160

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24. 9. 2.)(의안번호 3528)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6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연장(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적용기한 3년 연장 ○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정부 제출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465)

☐ 개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교통시설 확충사업, 에너지·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⁶⁾,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가 활용되는 점⁷⁾ 등을 고려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취지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교통세로 신설되었는데, 당시 부족했던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도입되었음.

1994년 교통세 신설 당시 법률의 유효기간을 10년 후인 2003년 12월 31일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2003년과

6)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0.8조원임.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2006년에 각각 교통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였고, 2007년부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⁸⁾로 2008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동 폐지법률안은 2009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음(법률 제9346호, 2010. 1. 1. 시행예정).

그러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이 공포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09년 9월에 다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및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모두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국회를 통과한 후 공포되었음(법률 제9901호, 2009.12.31. 시행).

이후 법률의 유효기간은 매 3년마다 계속 연장되었고, 2021년 유효기간 연장안이 통과되어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상태임.

8) 휘발유,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이며, 등유, 중유, 석유가스 등 다른 유류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연장 연혁]

구분	유효기간	비 고
교통세법 제정(1993. 12. 31.)	2003. 12. 31.	
1차 연장(2003. 12. 30.)	2006. 12. 31.	
2차 연장(2006. 12. 30.)	2009. 12. 31.	- 2009년 1월 폐지법률 통과 - 2009년 12월 폐지법률 시행일 연장
3차 연장(2009. 12. 31.)	2012. 12. 31.	
4차 연장(2013. 01. 01.)	2015. 12. 31.	
5차 연장(2015. 12. 15.)	2018. 12. 31.	
6차 연장(2018. 12. 31.)	2021. 12. 31.	
7차 연장(2021. 12. 31.)	2024. 12. 31.	

□ 개정안은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의 68%는 교통시설특별회계⁹⁾에, 23%는 환경개선특별회계¹⁰⁾에, 7%는 기후대응기금에, 2%는 균형발전특별회계¹¹⁾에 전입되고 있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될 경우 교통시설 확충과 환경정책 등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외에도 교육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세와 농어촌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

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10) 「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10893호) 부칙

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과 관련하여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세와의 형평성도 고려¹²⁾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과 환경정책 등에 사용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목적세로서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더 시급한 사업에 사용될 수 없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왜곡하거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초래할 수 있음.

둘째,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휘발유와 경유를 양쪽에서 모두 과세품목으로 규정하여, 조세체계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음¹³⁾.

「교통세법」 제정 당시 부칙에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당시 「특별소비세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¹⁴⁾, 일반 국민은 1993년 제정 당시의 부칙규정을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12) 정부는 2008년에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법률안」 외에도 「교육세법 폐지법률안」과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교육계 및 농어민의 반대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음.

13)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14)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제정법률 부칙 제9조(특별소비세법의 적용배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4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의 처
02)6788-5160